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58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김용민·백혜련·김남국

김종민 • 박범계 • 박주민

소병철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19. 12. 3 0.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, 2020. 1. 14. 공포되었음.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,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상 외국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의 공조를 요청할 때,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임(안 제15조제3항 및 제21조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2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	제15조(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
청) ①·② (생 략)	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
	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
	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요청
	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
	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제21조(검찰총장 경유) 이 법에	제21조(검찰총장 경유)
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	
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·서류	
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	
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	
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	
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</u> 고위공직자범죄수사
	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
	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